

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4] <개정 2020. 12. 31.>

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제조업자등 자체안전
교육계획의 기준(제48조관련)

항 목	내 용
1. 자체안전교육대상업소	<p>○ 자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소는 다음과 같다.</p> <p>가.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제조업소</p> <p>나.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화약류 판매업소</p> <p>다.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화약류 사용업소</p>
2. 자체안전교육계획	<p>가. (안전교육계획) 자체안전교육계획은 그 내용·방법·시기를 정한다.</p> <p>나.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제조업자는 종업원의 구분에 따라 다음에 정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한다.</p> <p>(1) 간부종업원 및 안전관계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</p> <p>(가) 안전의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</p> <p>(나)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일반의 성질 및 성능개요에 관한 사항</p> <p>(다) 제조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조성·성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</p> <p>(라) 제조시설의 구조·위치 및 설비의 기술상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</p> <p>(마) 당해 제조소의 제조방법의 기술상의 기준에 관한 사항</p> <p>(바) 화약류의 저장상의 취급기술 기준에 관한 사항</p> <p>(사) 화약류·저장소의 구조·위치 및 설비의 기술상의 기준에 관한 사항</p> <p>(아) 제조작업일지 또는 화약류저장소에서의 화약류의 출납의 기재에 관한 사항</p> <p>(자) 위험상황시의 응급조치 및 대피방법 등의 전반에 관한 사항</p> <p>(차) 위에 기재한 것 외의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령의 규정중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</p> <p>(카) 그밖의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제조 및 이에 따른 취급상의 안전관리 기술에 관한 사항</p>

(2) 일반종업원의 교육

- (가) 안전의식의 제고 및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일반의 성질개요에 관한 사항
- (나) 작업예정 또는 작업중인 제조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성질에 관한 사항
- (다) 사용예정이거나 사용하고 있는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제조시설의 구조·위치 및 설비의 기술상의 기준에 관한 사항
- (라) 제조예정 또는 제조중인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제조방법의 기술상의 기준에 관한 사항
- (마) 취급예정이거나 취급하고 있는 화약류의 저장상의 취급기술에 관한 사항
- (바) 제조작업일지 또는 화약류저장소에 있어서의 화약류의 출납의 기재에 관한 사항
- (사) 위험시의 응급조치 및 대피방법에 관한 사항
- (아) 위에 기재한 것외에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령의 규정중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
- (자) 그밖의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제조작업상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

(3) 미숙련 종업원의 교육

- (가) (2)항에 기재한 사항
- (나)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령의 규정중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
- (다) 그밖의 위에 기재한 것 외에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제조작업에 따른 안전상 필요한 사항
- (라) 안전교육은 제조책임자 그밖의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제조 또는 취급에 대한 안전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.
- (마) 안전교육은 종업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필요한 지식을 수습할 수 있도록 적당한 기간을 두고 반복 실시 하여야 한다.
- (바) 미숙련 종업원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당해 제조작업 등 취급에 종사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다. 화약류판매업자는 다음에 정한 내용의 안전교육을 실시하

여야 한다.

- (1) "나"항에 기재한 사항
- (2)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허가를 받은 화약류의 성질에 관한 사항
- (3) 판매(양도·양수)명세 또는 화약류저장소에 있어서의 화약류의 출납의 기재요령
- (4) 위에 기재한 것 외에 법령의 규정중에 필요한 부분에 관한 사항
- (5) 그밖의 화약류의 판매 및 화약류저장소에서 취급되는 안전관리상의 기술에 관한 사항

라. 화약류사용자는 다음에 정한 내용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(1) "다"항에 기재한 사항
- (2) 사용허가를 받은 화약류의 성질에 관한 사항
- (3) 사용(양도·양수)명세 또는 화약류저장소에 있어서의 화약류 출납의 기재요령 및 발파작업일지의 기재요령
- (4) 화약류 저장 및 사용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기술에 관한 사항

3. 안전교육자의 지정

가. 시·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공의 제조업자, 화약류판매업자 또는 다량의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상당기간 계속 화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나. 안전교육실시자로 지정된 사람은 종업원의 구분에 따라 다음에 정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(1) 간부종업원 및 안전관계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
 - (가)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공제조업의 간부종업원 및 안전관계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의 사항
 - (나) 사용중이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약류의 성질에 관한 사항
 - (다) 사용중이거나 사용하고 있는 화약류의 발파기술상의 기준에 관한 사항
 - (라) 화약류의 사용 또는 화약류저장소에 있어서의 화약류의 출납 기재요령
 - (마) 위에 기재한 것외에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령

의 규정중 필요한 부분에 관한 사항

(바) 그밖의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공의
사용에 따른 취급에 대한 안전관리기술에 관한 사항

(2) 일반종업원 및 미숙련 종업원의 안전교육

(가)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공제조업의
일반종업원 및 미숙련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의 사
항

(나)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공의 관리 및
화약류 발파의 준비, 화약류취급소 및 발파장소에 있
어서의 취급, 발파(전기발파·대발파를 포함한다)의
기술상의 기준에 관한 사항